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tudio Dragon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2. 국내외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교류사업
3.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사업
4.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기획, 제작 및 판매업
5. 이벤트, 문화행사의 주최, 주관, 후원 및 연예인 대리업
6. 무대, 세트 시스템 공사업
7.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8.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9.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연예보조업
10. 투자업, 투자자문업
11. 회사 목적과 관련된 인터넷신문사업
12. 안경 및 선글라스의 기획, 제조, 국내외 판매업
13. 방송기계, 장비, 시설 임대업
14.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NFT 포함) 관련 매매 및 중개업
15.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NFT 포함)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중개, 마케팅업, 광고대행업
16.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중개, 마케팅업, 광고대행업
17.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8. 상품의 도매 및 소매업
19.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그들 회사(이하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영관리업무

- (1)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5) (1)~(4)에 부수하는 업무

나.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 (1)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제공을 위한 자금조달
- (2)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20.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tudiodragon.net)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